

## 정산 및 담보 제공 약정서

인터내셔널에어트랜스포터소시에이션(이하 "IATA"라 한다)의 한국지부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갑의 Billing and Settlement Plan(이하 "BSP"라 한다) 가입대리점 \_\_\_\_\_(이하 "을"이라 한다)은, BSP 가입항공사를 대리하여 IATA와 을 사이에 체결된 Passenger Sales Agency Agreement(이하 "PSAA"라 한다)에 따른 대표대금 정산의무 이행 및 이를 포함한 일체의 금전지급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정산 및 담보제공약정서(이하 "약정서")를 체결한다.

제1조. 을은 PSAA에 따라 BSP 가입항공사가 을에 대하여 갖는 현존 및 장래 발생하는 대표대금 등 일체의 금전채권이 갑에게 신탁적으로 양도되었음을 인정하고, 이에 대하여 갑 또는 BSP 가입항공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
제2조. 을은 갑에게 매 주기 항공권 판매대금을 BSP정산주기표(BSP-KOREA TIMETABLE)상의 해당주기의 입금일자까지 현금으로 갑이 지정하는 정산은행에 납부한다. 또한, 을은 정산일자 이전에 납부한 조기정산금액에 관한 제반이익은 갑에게 있음을 인정하며,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
제3조. 갑은 PSAA 및 본 약정서 기간 중 을에 대해서 을의 금전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Passenger Agency Conference Resolutions Manual에 따른 담보제공 및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을은 갑의 이러한 요구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. 만일 갑의 정당한 담보제공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, 갑은 BSP 가입항공사를 대리하여 PSAA를 해지할 수 있다.

제4조. 을은 PSAA 및 본 약정서 유효기간 동안 갑에게 아래를 포함하여 갑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담보를 제공한다.

가. 을은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금 \_\_\_\_\_원을 가입금액으로 하여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공한다.

나. 을은 갑이 지정하는 은행에 금 \_\_\_\_\_원을 예치하고, 동 예치 금액에 대하여 갑 명의로 질권을 설정함. 이와 관련하여, 갑과 을은 본 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별첨과 같은 질권설정계약서를 체결하며, PSAA 및 본 약정서의 존속 기간 중 수시로 갑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질권설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함.

다. 을은 갑이 지정하는 은행을 연대보증인으로, 갑을 보증처로, 을을 채무자로 하여,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갑에게 제공한다.

이 경우, 보증금액은 금 \_\_\_\_\_원으로 함.

라. 그 밖에 갑이 요청하는 담보.

제5조. PSAA 및 본 약정서 갱신 시, 을은 위 제4조 각 호의 담보 내지 갑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기타 담보 또한 각 신규 제공 내지 갱신하여야 하며,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갑이 요청하는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.

제6조. 을이 본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, 갑은 언제든지 위 제4조 각 호의 담보를 실행할 수 있으며, 을은 이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하고, 여하한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. 갑 또는 BSP 가입항공사는 위 담보의 실행과 무관하게,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7조. 본 약정서는 PSAA와 일체를 이루며, 본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PSAA에 정한 바에 따르되, 본 약정서와 PSAA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, 본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한다.

제8조. 본 약정서는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일방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타방당사자에게 도달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된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갑 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18번지 한진빌딩 2306호

인터내셔널에어트랜스포터소시에이션 한국지부

대 표 홍 대 석

을 : (법인명)  
(주소)



(인)